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14

발의연월일: 2020. 8. 18.

발 의 자:민홍철・김진표・이용선

김병주 · 안규백 · 한정애

김병기 · 인재근 · 설 훈

홍영표 · 송영길 · 진선미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심신장애의 사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전사자·순직자·전상자·공상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로 인하여 전상 또는 공상 결정을 받아 전역한 사람이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신분이 군인에 해당되지 않아, 현행법상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예우와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 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54조의6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6(전공사상심사의 특례)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제37조제1항제 1호에 따라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 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전공사상심사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치료 중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최초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54조의6(전공사상심사의 특례)
	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제37조
	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한 후
	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
	<u>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</u>
	사망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에
	<u>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</u>
	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
	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.